

# 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③

- 50억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김 일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팀 팀장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글 읽는 순서]

① 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일반 : 지난 호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난 호
③ 적격심사 실무사례 : 이번 호

## Ⅲ. 적격심사 실무사례

지금까지 정부시설공사입찰에 있어서 조달청과 행자부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의 대표적인 중요내용을 Q&A형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삼아 실제로 조달청 입찰실무에 적격심사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달청 적격심사 실무사례》

### 1. 적격심사 대상자료

#### 가. 입찰자료

경기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2006-000호

###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0000신축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 000청사

다. 수요기관 : 경기도 000시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 2,200,000,000원

(추정가격:2,000,000,000원+부가가치세:200,000,000원+도급자설치관급:0원)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100,000,000원(단, 입찰공고일 7일 이전에 공고됨)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06. 1. 2(월) 10:00

3.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06. 1. 5(목) 11:00

4. 개찰일시 : 2006. 1. 5(목) 12:00

5. 개찰장소 : 경기지방조달청 입찰집행관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임

7. 입찰참가자격 :

7-1. 건설산업기본법령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한자이어야 함.

7-2. 본사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경기도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경기도 지역 등록업체와 49%이상 공동  
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분석

- 1) 경기지방조달청 입찰공고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적용
- 2) 추정가격 20억원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50억원미만 10억이상 기준 적용
- 3)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이상(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 4) 상기기준의 적격심사점수는 수행능력평가점수(30), 입찰가격평가점수(70)임.
  - 가) 시공경험점수(15점) : 업체의 3년간 합산한 시공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배 이상(42억원)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음.
  - 나) 경영평가점수(15점) : 부채비율은 업계평균비율(119.72%)의 50%미만인 59.86미만이어야 만점 7점, 유동비율은 업계평균비율(124.02%)의 150%이상인 186.03%이상이어야 만점 7점, 영업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만점 1점을 얻어 합계 만점 15점을 받을 수 있음.
  - 다) 입찰가격점수(70점) : 상기조건이 만족되면 예정가격을 임의로 산정 맞았다는 전제하에 투찰율을 86.745%로 잡아 투찰하고 이때 입찰가격점수는 65점이며, 개찰 후 본인이 산정한 예정가격이 실제 예정금액과 일치한다면 적격 1순위가 되어 낙찰자로 선정됨.
- 5) 조달청 추정가격 5억원이상 전문공사입찰이므로 입찰참여업체는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예정금액인 22억원을 초과하여야 됨.(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 6)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추정가격50억원 미만), 현장설명미필
- 7) 입찰참가자격 : 기계설비공사업등록, 경기도 소재 업체와 의무공동도급 49%이상이므로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도급업체를 찾아봐야 되며, 반드시 공동도급업체의 수행능력평가점수와 시공능력금액을 주의 깊게 봐야 됨.



- 나) 경영상태 : 부채비율(50%), 유동비율(190%)
  - 다) 해당업종 건설업 영업기간 : 5년
  - 라) 3년간 공사실적 합산금액이 90억원
- 2) B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기도업체는 구성원으로 서 시공비율 49%참여
    - 가) 시공능력공시액 : 15억원
    - 나) 경영상태 : 부채비율(40%), 유동비율(200%)
    - 다) 해당업종 건설업 영업기간 : 4년
    - 라) 3년간 공사실적 합산금액이 50억원
  - 3) 시공능력공시액산정 : A,B업체의 합산 시공능력공시액(35억원)이 공사예정금액(22억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여가 가능함.

2. 적격심사 실무사례

- 1) A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서울업체는 대표사로서 시공비율 51%참여
  - 가) 시공능력공시액 : 20억원

- 4) 시공능력공시액과 시공비율 검토
  - 가)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전문공사)이상 이므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산정은 시공비율에 공사예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나) A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20억원, 시공비율 51%  
 - 22억원(공사예정금액) × 51%(A업체시공비율) = 1,122,000,000원

- A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20억원은 시공비율 51%의 1,122,000,000원을 초과하나 해당 시공비율 51%만큼만 인정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 B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15억원, 시공비율 49%  
 - 22억원(공사예정금액) × 49%(B업체시공비율) = 1,078,000,000원

- B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15억원은 시공비율 49%의 1,078,000,000원을 초과하나 해당 시공비율 49%만큼만 인정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적격심사 점수산정

가) 수행능력평가점수 산정(30점)

① 시공경험평가점수(15점) 산정

○ 산식 : **【최근3년간 당해업종의 공사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 2)】 × 15**

$$\left[ \frac{A\text{업체실적}(90\text{억원}) \times 51\%(\text{시공비율}) + B\text{업체실적}(50\text{억원}) \times 49\%(\text{시공비율})}{21\text{억원}(\text{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2} \right]$$

× 15 = 25.142

○ 평점상한은 15점이므로 25.142가 나와도 15점이 됨

② 경영상태평가점수(15점) 산정

○ 업계전체평균비율(기계설비) : 부채비율(119.72%), 유동비율(124.02%)

○ 부채비율은 업계전체평균비율에 50%미만(59.86%) 평점 7점 만점

○ 유동비율은 업계전체평균비율에 150%이상(186.03%) 평점 7점 만점

○ 영업기간은 3년이상이면 평점1점 만점

○ A업체 부채비율(50%), 유동비율(190%), 영업기간 5년

○ B업체 부채비율(40%), 유동비율(200%), 영업기간 4년

○ 산식 : 부채비율평점 + 유동비율평점 + 영업기간평점

- A업체 부채비율평점(7점) × 51%(시공비율) + B업체 부채비율평점(7점) × 49%(시공비율)=7점(부채평점)

- A업체 유동비율평점(7점) × 51%(시공비율) + B업체 유동비율평점(7점) × 49%(시공비율)=7점(유동평점)

- A업체 영업기간평점(1점) × 51%(시공비율) + B업체 영업기간평점(1점) × 49%(시공비율)=1점(영기평점)

③ 수행능력평가점수 만점 30점이 나옴

나) 입찰가격평가점수 산정(70점) 및 투찰율

① 수행능력평가점수가 30점 만점이 나왔으므로 적격 통과 최저점수인 95점을 맞추려면 입찰가격평가점수는 65점이 되어야 된다.

② 산식

$$7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입찰가격점수

○ 입찰가격점수에 65를 대입시키고 예정가격은 맞았다 전제하에 100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입찰가격 즉 투찰가격은 절대값 이므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값이 나온다

○ 89.25와 86.75 이 두가지 값이 입찰가격이지만, 유념해야 될 것은 적격심사 원래의 뜻인 즉, **【예정가격이하로 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수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즉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적정 점수(추정가격 300억미만은 95점이상)를 취득할 경우 낙찰로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86.75로 투찰한 자가 유리**하며 백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86.745%로 투찰율을 정하면 된다.**

○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